

재 결 이 유 서

(행심 2020-18, 19, 20, 21호)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를 다른 공공기관에 접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송하도록 하였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되도록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정보공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을 알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송을 요청하였다.
-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적이 없어, 정보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인지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정보보유기관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0-0251)을 참고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

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같이 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라 할 것이고, 한편,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 을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청구’ 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 받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2)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 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송하였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다른 공공기관에 신청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가사,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심판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